

● 제299회 ●  
서울특별시의회(임시회)  
제2차 보건복지위원회

서울특별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  
검 토 보 고 서

2021. 3. 2.

보 건 복 지 위 원 회  
수 석 전 문 위 원

## 【 조상호 의원 대표 발의 】

의안번호 2182

### I. 조례안 개요

#### 1. 제안자 및 제안경과

- 가. 발 의 자 : 조상호 의원의 11명
- 나. 발 의 일 : 2021. 2. 5.
- 다. 회 부 일 : 2021. 2. 9.

#### 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##### 가. 제안이유

- 최근 카메라 기술의 발달 등으로 불법영상 촬영 및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.
- 특히 공공화장실과 모텔 등 숙박업, 목욕장 등 일상생활 속에서 이용이 빈번한 장소에서 불법촬영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바,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장소를 확대하여 시민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, 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- 또한 뉴딜일자리로 운영되던 안심보안관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이를 신규 추진 예정인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으로 변경하고자 함.

## 나. 주요내용

- “공공화장실 등” 등에 대하여 정의함(안 제2조).
-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정함(안 제3조).
- 공공화장실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도록 함(안 제4조).
-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심보안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7조).
-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자치구 및 서울지방경찰청,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(안 제10조).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공중위생관리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참조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참조

## II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이문성)

### 1 조례안의 개요

- 본 개정안은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장소를 화장실에서 모텔, 목욕탕 등 공중위생업소까지 확대하려는 내용임.
- 또한 사업이 중단된 안심보안관을 시민감시단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였음.

### 2 주요사항 검토

#### □ 불법촬영 예방 적용범위 확대 (안제2조 및 안제6조의2)

- 개정안(안제2조)은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적용범위를 공공 또는 민간화장실에서 카메라 설치 가능성이 높은 숙박업, 목욕장 등 공중위생업소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“공공화장실 등”의 정의에 공중위생업소를 포함하여 규정하려는 것임.

현행	개정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“공공화장실 등”이란 <u>공공화장실과 민간화장실을 말한다.</u>	제2조(정의) ----- -----. 1. ----- <u>공공화장실, 민간화장실 및 공중위생</u>

<p>2.·3. (생략)  <u>&lt;신설&gt;</u></p>	<p>영업소를 -----.</p> <p>2.·3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3의2. “공중위생영업소”란 「공중위생관리법」에 따른 숙박업, 목욕장, 이용업, 미용업, 세탁업, 건물위생관리업 등 공중위생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.</u></p>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 2018년 개정된 「공중위생관리법」에서 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소에 불법촬영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, 이를 위반시 구청장에게 영업 정지나 일부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폐쇄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.

**「공중위생관리법」**

[시행 2018. 12. 11] [법률 제15873호, 2018. 12. 11, 일부개정]

**제5조(공중위생영업자의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)** 공중위생영업자는 영업소에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4조제1항1)에 위반되는 행위에 이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.

**제11조(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)**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등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관광숙박업의 경우에는 해당 관광숙박업의 관할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

4의2. 제5조를 위반하여 카메라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

1)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(약칭: 성폭력처벌법) 제14조(카메라

-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불법촬영 예방 적용범위를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중위생업소까지 확대하여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.
- o 또한 시장으로 하여금 민간에서 운영하는 공중위생업소를 점검하거나, 탐지기 등 장비 대여를 통한 자체점검 및 자체점검 확인증 제공을 통해 민간에서 운영하는 공중위생업소의 점검유도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(안 제6조의2), 정의규정에서 확대한 사업 적용범위인 공중위생업소에서도 불법촬영 예방 사업을 실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음.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안심보안관) ① 시장은 공 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점 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<u>안심 보안관</u>을 운영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의 <u>안심보안관</u>의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</p>	<p>제7조(불법촬영 시민감시단) ① - ----- ----- <u>불법 촬영 시민감시단</u>(이하 “<u>시민감 시단</u>”이라 한다)-----.</p> <p>② ----- <u>시민감시단</u>----- ----- -----.</p>

등을 이용한 촬영)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·판매·임대·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·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□ 변경된 사업명 현행화 (안제7조)

- 조례안은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의 명칭을 “안심보안관”에서 “불법촬영 시민감시단”으로 변경하였는데, 이는 2016년부터 뉴딜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해온 안심보안관 사업이 일자리정책과의 부적정 결정(일자리정책과-18821호)에 따라 2020년말로 폐지되면서, 이를 여성정책담당관이 직접 시민감시단의 형태로 전환·운영하는 것을 반영하여 현행화 시킨 것임.

현행	개정안
<p>제7조(안심보안관) ① 시장은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<u>안심보안관</u>을 운영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의 <u>안심보안관</u>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</p>	<p>제7조(불법촬영 시민감시단) ① - ----- ----- 불법 <u>촬영 시민감시단</u>(이하 “<u>시민감시단</u>”이라 한다)-----.</p> <p>② ----- <u>시민감시단</u>----- ----- -----.</p>

- 다만 지난 4년간 48억원 가량의 예산을 쏟아부어 운영한 안심보안관 사업이 이미 행정사무감사나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 시에도 여러번 지적된 것과 같이 집행실적은 있으나 실제로 적발하거나 검거한 사례가 없는 등 낮은 사업 실효성과 인력의 전문성 부재로 인해 폐지된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.

- 또한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이 사실상 기존의 안심보안관에서 명칭만 변경하여 유사한 형태로 추진하는 방식이 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세심한 집행계획 마련이 요구된다 할 것임.

### 3 종합 검토 의견

- 본 조례안은 시민들이 불법촬영에 노출되기 쉬운 화장실외에도 모텔 및 목욕탕 등 공중위생업소까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촬영 예방 사업의 확대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, 그 입법취지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음.
- 다만 폐지된 “안심보안관”을 “불법촬영 시민감시단”으로 개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수행인력의 전문성 부재 및 낮은 실적이 사업 폐지의 원인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, 기존 사업과 유사한 인력구성과 방식으로 시민감시단을 운영하기 보다는 사업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임.

문 의 처

이정화 입법조사관 (02-2180-8146)